

# 미래세대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2.07.13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(이하 본 학회) 시행세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미래세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미래세대위원회의 기능) 미래세대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분야의 신진연구자와 학생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며, 관련 분야 전문성 제고와 학술발전 그리고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학술회와 강연회의 개최 및 참여
2. 소식지와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
3. 산학연 신진연구자와 학생회원 상호간 교류협력
4. 원자력이용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협조 증진
5.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미래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) 미래세대위원회의 구성과 임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.

1. 위원회는 만 40세 이하 회원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며, 위원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.
3. 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을 구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4. 위원장은 미래세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이를 보조한다. 단, 불가피한 상황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.

제4조(활동 비용 지원 및 보고) ① 본 학회는 미래세대위원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지원받은 예산 내에서 집행한 후 활동내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